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0. . . (제 회)	

선박직원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문성혁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현장승선실습 근거, 현장실습 계약 체결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의 내용으로 「선박직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7029호, 2020. 2. 18. 공포, 2020. 8. 19. 시행)됨에 따라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인용조문 정비 등 그 밖에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지정교육기관의 정의 삭제(제2조제7호 삭제)

지정교육기관의 정의가 법 제2조의4제3호로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지정교육기관 정의를 삭제함

나.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정비(별표 5 제2호)

법 제31조제1항 개정으로 신설된 현장승선실습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하고, 법제처의 과태료금액 지침(2019. 2. 12. 국무회의 보고)에 따라 시행령 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법률 상 상한액의 일정 범위 이상이 되도록 정비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7호를 삭제한다.

제26조 중 “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2호 개별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
가. 법 제3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호	360
나. 법 제31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현장승선실습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승선실습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1호	360
다. 현장승선실습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1항제2호	250
라. 선박직원의 면허 또는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승무 중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박직원을 계속 승무시킨 경우	법 제31조제2항제1호	150
마. 선박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3항제1호	50
바. 선장이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면허증 또는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	법 제31조제3항제2호	50
사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심사를 거부·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31조제2항제2호	150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8월 19일 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	제2조(정의)	-----	
1. ~ 6. (생 략)			-----.	
7. “지정교육기관”이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·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(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), 해양경비안전교육원, 「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」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(이하 “한국해양수산연수원”이라 한다)과 그 밖의 교육기관을 말한다.		1. ~ 6. (현행과 같음)		
8. ~ 10. (생 략)		<삭 제>		
제2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.		8. ~ 10. (현행과 같음)		
		제26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		

		-.		